##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83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태선ㆍ이기헌ㆍ권칠승

정준호 · 김영배 · 김태년

장철민 • 한민수 • 김준형

박 정ㆍ이용우ㆍ맹성규

이훈기 • 박균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 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 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 등을 말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4(아동에 대한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 본인과 아동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관심사, 건강상태, 위치정보 등 개인적 특성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 2.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광고의 제공
  - 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의 제공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 시까지의 시간에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 본인과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4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한 자
  - 2의3. 제4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제공한 자
  - 2의4. 제4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 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2의5.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u>
	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
	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
	<u>차 등을 말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2조의4(아동에 대한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
	본인과 아동의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관심사, 건강상태, 위치정보
	등 개인적 특성을 분석 및 예
	측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
	화된 처리
	<u>2.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 정</u>

보통신망이용정보를수집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등을추천하는알고리즘을활용한광고의 제공

- 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 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 를 추천하는 서비스의 제공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자정부터 그 다음 날으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보인과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 8. (생략)

야 한다.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 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자동화 된 처리를 한 자

2의3. 제4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제공한 자

2의4. 제4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2의5.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같은 조 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3. ~ 8. (현행과 같음)